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1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념

✔ 사업장 건강진단의 의미

- ▶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해로움을 찾아내어,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→ 건강영향평가!
- ▶ 정상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건강검진 종류

☑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, 시기 및 주기 비교

구분	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	그 밖의 근로자	
		일반부서	유해부서
작업에 배치하기 전			배치전건강진단
다른작업으로 배치를 전환할 때			배치전건강진단
정기적으로	일반건강진단 (2년에 1회)	일반건강진단 (1년에 1회)	일반건강진단(1년에 1회) 특수건강진단(6개월·1년·2년)
직업병 의심 증상·소견 호소시			수시건강진단
지방관서 장의 명령	임시건강진단	임시건강진단	임시건강진단
이·퇴직 후			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(주기: 1년)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건강검진 종류

● 건강진단 판정

판정구분	판정기준
정상A	1차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
정상B(경계)	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습관,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
일반질환 의심	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
고혈압·당뇨병질환 의심 (2차 검진 대상자)	1차 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
유질환자	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,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



Print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특수건강진단

❖ 일반건강진단

- ▶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

❖ 특수건강진단

- ▶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,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,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

❖ 수시건강진단

- ▶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특수건강진단

❶ 임시건강진단

▶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,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
-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·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
-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특수건강진단

④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

〈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시행규칙 제98조제2호)〉
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		분류	종류	측정
1	유기화합물	화학적 인자	108종	113
2	금속류	화학적 인자	19종	23
3	산 및 알칼리류	화학적 인자	8종	17
4	가스상태 물질류	화학적 인자	14종	15
5	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	화학적 인자	13종	13
6	금속기공유	화학적 인자	1종	1
7	분진	분진	6종	6
8	물리적 인자	물리적 인자	8종	2
9	야간작업	야간작업	2종	0
			179종	190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특수건강진단

✔ 대상자 선정기준

- ▶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✔ 적용 고려사항

- ▶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점에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강진단 대상자로 정하고, 이때 노출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
- ▶ 작업환경측정결과, 작업공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대상 유해인자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특수건강진단

✔ 대상자 선정기준

- ▶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✔ 적용 고려사항

- ▶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점에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강진단 대상자로 정하고, 이때 노출된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
- ▶ 작업환경측정결과, 작업공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대상 유해인자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1 유해화학물질 근로자 알 권리

① MSDS제도의 도입배경

- :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
- :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를 위해 예방과 사고 시 신속 대처
- :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
- : 국가 차원의 종합적, 체계적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
- :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

② MSDS 기재사항 16가지 항목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: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| : 물리화학적 특성 |
| : 유해성·위험성 | : 안정성 및 반응성 |
| :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| : 독성에 관한 정보 |
| : 응급조치 요령 | : 환경에 미치는 영향 |
| : 폭발·화재 시 대처방법 | : 폐기 시 주의사항 |
| :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| : 운송에 필요한 정보 |
| : 취급 및 저장방법 | : 법적 규제현황 |
| :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| : 그 밖의 참고사항 |



Print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1 유해화학물질 근로자 알 권리

☑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

: MSDS 확보 및 비치

- 화학물질 판매업체에서 받아서 비치한다.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.

: 근로자에 대한 교육

- MSDS의 내용을 취급근로자에게 교육시켜 작업환경관리,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GHS

✔ GHS란?

: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(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)으로써,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,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

✔ 제도실시 배경

: 화학물질의 대량사용 : 인간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유해, 위험성 화학물질의 대량사용
: 국가별 또는 자국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혼동된 정보 전달 우려
: 중복된 경고 표시 및 MSDS

✔ 작용원칙

: GHS는 모든 유해, 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.
: 경고표지 및 MSDS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적용된다. 특히, 작업장 근로자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교육이 강조된다.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GHS

● GHS 경고표지

- 구성

(1) 경고표지 요소

- ① 명칭 :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
- ② 그림문자 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,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
- ③ 신호어 : 유해,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“위험” 또는 “경고” 문구
- ④ 유해, 위험 문구 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, 위험을 알리는 문구
- ⑤ 예방조치 문구 :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,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,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정보
- ⑥ 공급자 정보 :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GHS

● GHS 경고표지

- 구성

(2) 경고표지 요소별 작성방법

① 명칭

-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명칭을 기재한다.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.

② 그림문자

㉠ 형태 및 색상

- 정마름모꼴의 적색테두리(부득이한 경우 흑색 테두리)와 그 내부에 유해, 위험성을 나타내는 흑색 심벌로 구성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GHS

☑ GHS 경고표지

- 구성

(2) 경고표지 요소별 작성방법

① 명칭

-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명칭을 기재한다.
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.

② 그림문자

④ 심벌

불꽃(Flame)	원위의 불꽃	폭탄의 폭발
		
부식성	가스실린더	해골과 X형 뼈
		
급만부호	환경	건강유해성
		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방안

④ 화학물질 소분용기 경고표지 표시(부착) 기준

구분	내용
경고표지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비치 등)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5(경고표지 방법 및 기재항목) ○ 표시기준 :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해당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.(단, 용기에 이미 경고표지가 되어 있는 경우 제외)
경고표지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 작성 ○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○ 유해·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
경고표지 포함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명칭 :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② 그림문자 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·위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③ 신호어 : 유해·위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"위험" 또는 "경고" 문구 ④ 유해·위험 문구 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·위험을 알리는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: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·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알리는 유의사항 ⑥ 공급자 정보 :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
확보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안전관리실에서 경고표지 수령 및 기재사항 기록 후 해당 용기에 부착 ②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MSDS 작성 및 인쇄 후 해당 용기에 부착 - 이때 해당 용기 규격과 용당에 비례하여 인쇄 후 부착



Print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방안

☑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작성·비치·교육 기준

구분	내용
MSDS 게시·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비치 등)제3항 ○ 비치장소 : 해당 화학물질 취급실험실 내 쉽게 식별장소(안전보건자료함 등) (단, 자료가 많을 경우 바인더 편철 등 방법으로 별도 보관 가능)
MSDS 확보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화학물질 제조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(법적 게시 및 비치용) ②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(단, 참조용만 가능, 법적 비치 불인정) ③ KIER : KIKEP>게시판>안전관리>물질안전보건자료 KIKEP>부속/연계시스템>보건관리>MSDS ④ 화학물질(시약) 구입 업체
MSDS 구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·위험성 ③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
화학물질 취급자 MSDS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대상 : 해당 화학물질 취급자 ○ 교육시기 : 해당 화학물질 취급 전 ○ 교육내용 : 해당 화학물질 유해·위험성, 안전취급방법 등



Print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1 의약품 투여(법적 근거)

- ✔ 건강관리실을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1차 의료를 제공하기 위함
- ✔ 직무영역 : 1차 의료행위(처치 및 투약), 근로자 건강상담, 환자의뢰, 비품 및 시설관리, 기록 및 보고
- 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
 -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
 - *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에 따른 의사, 간호사에 한함
 - 가.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
 -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- 다. 부상,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-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 지도 및 관리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구급용구

- ❖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(구급용구)
 -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,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붕대재료·탈지면·핀셋 및 반창고
 - 2. 외상(外傷)용 소독약
 - 3. 지혈대·부목 및 들것
 - 4. 화상약(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)
 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2 구급용구

☑ 구급용구 구비 목록(예시)

구분	용도	세부목록
응급키트	드레싱	외상패드, 면붕대, 탄력붕대, 멸균거즈, 비접착패드, 반창고, 삼각건, 멸균면봉, 위상장갑
	위생&소독	멸균물티슈, 식염수, 외상연고, 소염진통제, 소독겔 연고
	의료용구 및 기타	핫&콜드 팩, 부목세트, 응급가위, 포셉, 보온포, 심폐소생술마스크
	밴드	관절밴드, 손가락밴드, 표준밴드, 방수밴드
부목	골절 시 팔, 다리 고정용	알루미늄부목 1개, 탄력붕대 또는 코반(3인치) 2개
들것	환자 이송용	접이식 들것 1개
화상약	경미한 화상 및 상처	멸균 바세린 거즈 5개, 화상연고, 항생제연고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의약품 구매 및 관리

- ❖ 보건관리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함
 1. (시장조사) 견적을 받아 적정 거래처를 조사
 2. (업체선정) 견적서를 비교하여 적정업체 선정
 3. (구매발주) 회사의 규정 및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매량을 결정
 4. (검수확인) 납품된 의약품의 수량, 유효기간, 포장상태 등을 검사하고 불합격품은 반품 또는 교환 요구
 5. (대금지급) 비용정산은 회계업무 처리절차에 따름
 6. (물질안전보건정보_MSDS) : 약품설명서로 대체하여도 됨
 7. (사용기록) 의약품 사용내용을 보건관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함
 8. (재고조사) 의약품 수불부 양식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구입량, 사용량, 재고량을 파악해야 함
 9. (유통기한) 정기적 재고조사를 통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즉시 폐기처리



▶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.

3 의약품 구매 및 관리

- 보건관리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함

10. (비상약품 관리)

- 가. 야간 또는 보건관리자 부재 시 등 건강관리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약국 또는 병, 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사내 지정장소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
- 나. 고정비치 장소를 지정하고 각 비치 장소별 책임자가 관리 책임자로 관리하도록 함
- 다. 보건관리자는 지급 의약품의 품명, 효능, 효과,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고 증상별 적정사용량 구급약품의 수불부를 비치, 게시하여 사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함

